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

본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절차)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일정, 목적, 안건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최 최소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재적 이사 3인이상의 동의로 제1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가 제14조 4항 4호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의 3, 4호 규정의 경우에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장은 이사회 소집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금액, 납입방법 등 결정, 변경)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신규 회원의 승인 및 회원 제명 결정
8. 기타 주요사항

제27조 (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이사회 성립 정족수일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② 이사회에서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의결권)

- ① 본회의 이사는 모두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이사가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본회와 이사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이사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9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